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11월 27일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15일, 금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5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11월 27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23. 3. 28. 개정, 2023. 9. 29. 시행) 개정
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지원대상(안 제4조)
- 지원방법 및 내용(안 제5조)
- 업무의 대행(안 제6조)
- 점검 및 비용환수(안 제7조 및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추병수

나. 검토의견

1) 제정 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2) 조례 경과 사항

- 조례 제정 : 2017. 5. 15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 폐지 : 2019. 5. 19
(2018년 3월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가 제정되어 구 조례의 존치 필요성 상실: 운영·지원 내용 등 동일)

3)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 규정
 -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
- 지원대상(안 제4조)
 - 금천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 지원방법 및 내용(안 제5조)
 - 지원 내용 : 영치실 안치료, 봉안대상자의 공고 비용 등
- 업무의 대행(안 제6조)
 -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4) 시·구 조례의 비교(동일<유사> 여부)

구 분	요 약 내 용		비 고
	시 조 례	구 조 례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례지원 및 빈소마련 ◦ 고인의 존엄성, 공동체의식 ◦ 사회복지 가치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례지원에 필요사항 ◦ 고인의 존엄성 유지 	유사함
지원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무연고 사망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라 장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마을장례, <u>시장·구청장이 장례지원 필요시</u> ◦ 아동학대 사망자로 연고자의 장례 능력부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연고 사망자 ◦ 수급자가 관외에서 사망한 경우 ◦ <u>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u> 	
지원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현물지원 원칙</u>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금지원 ◦ 매장비용 지원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방법 : 없음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례절차,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지원 ◦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한 지원 ◦ 사망자 봉안시설 개방 ◦ 지원수준은 시장이 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안실 안치료, 봉안대상자 공고비 ◦ 관외 사망자 운구비 	
지원신청 및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신청 : 없음 ◦ 업무 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관리,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례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사 ◦ 지원목적에 맞게 지원되었는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례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 점검 	유사 동일함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하게 지원받은 경우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하게 지원받거나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유사 동일함

다. 검토의견

- 상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23. 3. 28)의 개정 에 따라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지원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무연고 사망자에게 공공의 지원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책무를 수행함과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성이 인정되며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조례 제정과 폐지를 거듭한 사례가 있으므로 주민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홍보 등의 세심한 행정 운영이 필요하다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